

대법원 2012. 1. 12 선고 2011다9180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등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2. 1. 12 선고 2011다91807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11. 10. 6 선고 2011나3574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. 11. 17 선고 2009가단25416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노○○

서울 강남구 ○○

피고, 상고인 대한민국

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△진

소송수행자 김○○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1나3574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2.1.12.

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